



2020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회의소집통보일자	2021. 01. 21.
위원정수 : 9명	재적위원 : 9명

1. 일 시 : 2021년 01월 28일(목) 13:00
2. 장 소 : 대학본관 2층 대회의실
3. 참석위원 : 6 명(위원장 : 김경화, 위 원 : 조정우, 김순경, 이창섭, 허성호, 표세희)
4. 불참위원 : 3 명(이성율, 이동규, 이건희)
5. 참석교직원 : 0 명

6. 안 건

제1호 의안)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 심의

제2호 의안)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(안) 심의

제3호 의안)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(안) 심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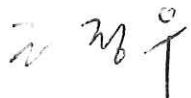
제4호 의안) 2021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 승인(안) 심의

제5호 의안) 등록금심의위원회회의록 간서명 추천

7. 회의내용

가. 개회

- 김경화 위원장이 9명 재적위원 중 6명 참석으로 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확

	김경화 위원장	김순경 위원	조정우 위원
<간서명>			

인하고, 2020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.

나. 안건 심의

제1호 의안)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 심의
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20 회계연도 교비회계 3차 추가경정예산(안)과 주요사항을 설명하다.
 - 2020 회계연도 교비회계 3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예산서(안)
- 이창섭 위원이 코로나-19로 인한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재정 수입 감소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 질의하다.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회계별 재원 마련 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.
 - 등록금회계 - 동부산대학교 폐교 및 소속 대학교 재학생 유입에 따라, 이로 인한 등록금 수입 증가로 당해연도 지출예산 재원 확보
 - 비등록금회계 - 평생교육 및 기숙사 관생 수입 감소에 따라, 해당 재원을 적립기금 인출(코로나-19 특별장학금 지급 등) 및 당해연도 대학 위임 기부금 수입 재원으로 경상운영비 등의 지출 재원 마련
- 허성호 위원이 2020학년도 명예·조기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지급 재원에 대하여 질의하다.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20학년도 발생한 명예·조기 퇴직교원 퇴직금 지급 재원으로 등록금회계를 우선으로 편성 지급할 예정이며, 이는 차년도에 편성될 보수 인건비 규모를 낮추고 퇴직기금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하다.
-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김경화 위원장이 전 위원의 동의로 2020 회계연도 교비회계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. (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제2호 의안)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(안) 심의

	김경화 위원장	김순경 위원	조정우 위원
<간서명>	김경화	김순경	조정우
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21 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(안)과 주요사항을 설명하다.
 - 2021 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 자금예산서(안)
- 허성호 위원이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라 본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질의하다.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대학본부에서 시행한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학생 교육 서비스 및 교사(校舍) 보수유지 운영비용 등의 고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 예산 감축 조치에 대해 설명하다.
 - 비등록금회계 예산과 연계하여 비등록금회계 예산으로 집행가능한 예산 전용 편성
 - 건축기금, 퇴직기금, 장학기금, 특정목적기금 등 각 기금별 목적에 따라 집행가능한 예산 검토 후 기금재원으로 지출예산 편성
 - 부서·학과별 등록금회계 外 집행 불가능한 지출예산의 규모 축소 조정 편성
- 조정우 위원이 당해연도 본예산에서도 지출 조정이 가능한 예산은 항시 모니터링하여 다가오는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하다.
- 김순경 위원이 조정우 위원의 의견을 재청하다.
-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김경화 위원장이 전 위원의 동의로 2021 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(안)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. (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제3호 의안) 2021 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심의
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20 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다.
 - 사립학교법 제32조의3(이월금) 및 이월금 정의와 종류
 - 등록금회계 잉여금 발생 시 처리원칙
 - ① 등록금회계 예산을 편성, 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의 최소화 노력함
 - ② 이월금 중 구체적인 예산절감, 사업취소, 불용액 등의 교비회계 잉여분

	김경화 위원장	김순경 위원	조정우 위원
<간서명>	김경화	김순경	조정우

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교육비에 지출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 중 장학금, 연구학생경비, 도서구입 순으로 우선 편성함

● 비등록금회계 잉여금 발생 시 처리원칙

- ① 비등록금회계 예산을 편성, 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의 최소화에 노력함
 - ② 이월금 중 구체적인 예산절감, 사업취소, 불용액 등의 비등록금회계 잉여분이 존재하는 경우 학교법인에서 지원하지 못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에 지출할 것을 원칙으로 함
- 별 다른 질의가 없어 김경화 위원장이 전 위원 동의하에 제3호 의안인 2021 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 (찬성: 6, 반대: 0)

제4호 의안) 2021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의
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「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」 제47조에 대하여 설명하다.

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

제47조(법인부담금)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. 다만,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② 「사립학교법」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.

- 2021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961,700 천원 중에서 법정부담전입금예정액 100,000 천원을 제외한 861,700 천원을 학교부담 신청금액으로 요청하다.
- 허성호 위원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이 학교법인에서 우선 지출 편성인 점을 감

	김경화 위원장	김순경 위원	조정우 위원
<간서명>	김경화	김순경	조정우

안하여 지속적으로 학교법인 전입금 규모를 확대하여 교비회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주문하다.

- 이창섭 위원이 허성호 위원의 의견을 재청하다.
-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김경화 위원장이 전위원의 동의로 2021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의가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 (찬성:6, 반대:0)

제5호 의안)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간서명 추천

- 김경화 위원장이 사립학교법 제18조2제2항에 의거한 간서명 대표위원을 추천받다.
- 표세희 위원이 간서명 대표위원으로 김경화 위원장, 김순경 위원, 조정우 위원을 추천하다.
- 전 위원이 간서명에 대하여 동의하다. (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다. 폐 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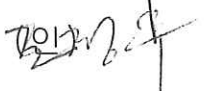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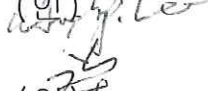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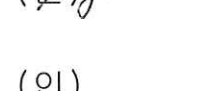
- 김경화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



<간서명>	김경화 위원장	김순경 위원	조정우 위원
	김경화	김순경	조정우

위 사실을 확인함.

2021. 01. ~~08.28~~

위 원 장	:	김 경 화	
위 원	:	조 정 우	
위 원	:	김 순 경	
위 원	:	이 창 섭 (인)	
위 원	:	허 성 호 (인)	
위 원	:	이 동 규 (인)	
위 원	:	표 세 희 (인)	

위와 같이 심의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


2021. 01. 28.

동의과학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

동 의 과 학 대 학 교 총 장 귀 하

이 사 본 은 원 본 과 상 위 없 음 을 증 명 합 니 다

년 월 일

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

